

상속의 법률상식



김 상 배

농협중앙회 하나로봉사실 과장

지난 달에 가족법 전반에 걸쳐 최근 바뀐 내용을 다루었다.

그 내용중에 특히 상속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에 상속관계 법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상속관련 법규

상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5편 상속편에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민법 제997조부터 제1118조에 이르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외에 민법 친족법편,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국세징수법등에도 관련되는 조항이 있다.

2. 상속의 일반상식

◆ 상속은 누군가 사망해야만 이루어진다. (민법 제997조)

즉, 살아있는 사람이 자손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고 죽은 사람의 재산이 법에 정한 상속 대상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상속인 것이다.

그리고 사망사실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또는 사망신고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는다.

◆ 상속은 사망순간에 이루어진다.

상속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을 기준하므로 훗날의 사망신고나 호적정리 등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망순간의 상속법을 적용 받는다.

즉 91. 1. 1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이 결정되지만 그 이전에 사망했다면 그 당시 법률을 적용받는다. 예를들어 시집 간 딸의 상속지분은 91. 1. 1이후에는 다른 형제와 똑같지만 그 이전의 상속지분은 미혼형제의 4분의 1이 되는 것이다.

또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자끼리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각 별개의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런예는 대개 비행기추락, 선박침몰, 건물이나 다리의 붕괴, 화재등의 대형 재난시에 발생하는데 법의학적 소견으로 사망시간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 상속권의 보호규정이 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가로채거나 상속 대상자들이 서로짜거나 속이고 그중 한두사람을 제외 시켰을 경우 피해를 입은 상속인은 상속회복을 청구 하여 마땅히 법에 맞는 절차와 방법으로 지분을 차지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상속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다.

-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 3순위 : 형제 . 자매
- 4순위 : 4촌이내 혈족

즉 고인(죽은사람)의 부인(또는 남편)과 자녀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부인과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고인의 형제와 자매들이 상속권자가 된다.

3순위까지도 권리자가 없다면 4촌이내의 혈족, 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외숙, 이모, 조카등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죽은사람과 3촌간) 그다음에는 죽은사람과 4촌간인 종형제자매, 내외종형제자매, 이 종형제자매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이때 양자로 입양된 사람도 친자손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 또 양자는 생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생기게된다.

또 아버지의 사망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보고 상속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할 형제중에 아버지보다 먼저죽

은 사람이 있을때 먼저죽은 형제의 아들 딸은 죽은 아버지의 권리를 대신 이어받아 아버지의 지분 만큼을 다른 숙부들과 함께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91. 1. 1이후 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상속자격을 잃는 수도 있다.

때론 범죄자는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즉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 또는 선순위나 동순위 상속인을 해치거나 해치려 한경우, 또 해를 입혀 죽게한 경우, 사기나 강압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을 하도록 한 경우, 유언을 위조하거나 함부로 고치거나 감추거나 없앤 경우 그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없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상속후에 밝혀지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는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상속될 재산을 노린 범죄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재산가들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 제사는 제사를 잘 모시는 자손에게 넘어간다.

옛날에는 제사가 큰아들로 대를이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호주를 큰아들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직업, 종교, 질병, 기타 형편으로 조상의 제사를 큰아들이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리고 형제간에 협의하여 가장 잘 모실수 있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제사를 반드시 큰아들이 모시던 것을 고쳐 잘 모실수 있는 사람, 실제로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다.

그에따라 제사와 관련된 제기, 위토, 등의 소유권도 그에 따르는 것이다.

◆ 유언이 없으면 상속권자는 같은 지분을 상속 받는다.

예를들어 상속인이 5남매 일경우 이 5명은 상속재산을 각각 5분의1 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

그리고 5명은 각각 남녀, 출가여부, 결혼여부 등에 상관없이 공평하다(균분 상속주의).

그러나 이때 고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는 자녀들의 지분보다 0.5할이 더많은 지분, 즉 1.5를 계산하여 받게된다. (배우자 상속분) 이것은 대체로 노년에 배우자를 잃고 흘로된 사람을 도와주는 취지이다.

◆ 특별히 혜택받은 부분도 계산한다.

여러 형제중 부모 생전에 특별히 많은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은 상속지분 계산시 그 금액을 계산, 다른 형제와 공평하게 한다.

만약 그전에 물려받은 재산이 자신의 계산 지분보다 많다면 그 부분만큼을 반환해야 한다.(특별수익자 상속분)

그리고 이 규정의 적용시기는 91. 1. 1부터이다.

◆ 효자에게는 따로 더 주도록 한다.

부모의 노후에 부모를 잘 모신 자식이나 부모의 사업을 도와 재산을 늘리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은 그 공로만큼 더 받을수 있다.

이것을 기여분 제도라 하는데 기여의 정도나 기여인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그만큼을 따로 주도록 해야한다.

만약 상속인끼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기여분의 계산을 청구하면 된다.

◆ 상속을 포기 할수도 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거나 다른 사정으로 상속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경우 상속을 포기 할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재산 금액의 범위내에서만 빚을 상속받겠다고 하는 한정 승인 방법도 있다. 이것 역시 3개월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상속의 일반상식은?

상속은 누군가 사망해야만 이루어진다.

상속은 사망순간에 이루어진다.

상속권의 보호규정이 있다.

상속순위가 정해져있다.

상속자격을 잃는 수도 있다.

제사는 제사를 잘 모시는 자손에게 넘어간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권자는 같은 지분을
상속 받는다.

특별히 혜택받은 부분도 계산한다.

효자에게는 따로 더 주도록 한다.

상속을 포기 할수도 있다.

상속은 4촌까지만 된다. 그후는...

유언제도가 있고 또 유언은 존중된다.

유족에게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된다.

상속 재산이 많은 것이 좋은것만은 아니다.

상속인들의 학목이 가장큰 재산이다.

◆ 상속은 4촌까지만 된다. 그후는...

6.25때 월남한 실향민,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 고아등 국내에 혈족이 없는 사람이 혼자살다가 큰재산을 남기고 죽는 경우 법에따른 상속순위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유언제도가 있고 또 유언은 존중된다.

고인이 생전에 미리 자신의 사후처리 방법을 정해놓는 것이 유언이다.

유언은 자필로 쓴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등의 방법이 있는데 유언으로 남길수 있는 것은 재단의설립, 친생자부인, 친생자인정, 후견인의 지정,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분할금지 지정, 유언집행자의 지정, 재산의 기증, 신탁등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후손에게 생활태도나 꼭 이루해야 할 목표, 할 일등을 당부하는 것은 현실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언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유훈이라 하여 따로 구별하고 무효로 본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유언이 보편화 되어 있어 젊은 사람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유언장을 만들어 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길한 것으로 여겨 널리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과 문화가 서구화 되고 있고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큰 재산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유언제도에 대해 각자 깊이 생각해보고 또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유족에게 최소한의 재산은 보장된다.

만약 고인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회단체나 종교 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자칫하면 유족들은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당장 살곳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법률로서 유류분제도를 두어 고인의 유언에 불구하고 최소의 상속은 보장하고 있다.

유류분제도에 따른 상속지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과 배우자)이거나 3분의 1(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또 상속1순위권자가 있을 때 그 순위권자 이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되찾아야 할 유류분이 있는 것을 뒷날 알았다면 그것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 생각해 두어야 할 일

◆ 상속 재산이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랑스런 자녀나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된 사람의 공통적인 소망이다.

그러나 재산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재산 때문에 오히려 계을러지고 방탕해져 폐가 망신하는 일이 더 많다. 또 재산의 많고 적음이 행복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재산보다는 후손의 학문과 인격수양에 더 힘써왔다.

그리고 재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러한 재산을 이루게 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며 그 재산이 가치를 발휘하게 해준 것은 바로 이 사회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생계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하는데 따른 역효과가 오히려 큰 만큼 생전이나 사후에 사회단체나 교육기관등에 기증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명예로운 것이다.

◆ 상속인들의 화목이 가장 큰 재산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적든 상속인끼리 다투는 경우가 많다. 또 고인의 장례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장례직후에 상속인끼리 법전을 펼쳐 놓고 펫대를 세우며 언성을 높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천박한 행동이고 문상객은 물론 인근 주민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법정의 상속지분율이나 상속순위는 상속인끼리 다툼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판단해주는 기준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의 합의이다.

상속재산이 작다면 별로 크지도 않은 지분을 두고 다투어보아야 더 큰 손해를 입는 것이고 살림이 넉넉하면 굳이 더 많은 재산을 탐내어 그 부작용으로 더 큰 것을 잃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인의 상속재산 중 가장 큰 것은 상속인들의 화목이다. 서로 양보하고 가능하면 고인의 이름으로 장학사업이나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인 것이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사회사업을 할 만큼 많지 않다면 고인의 후손 중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어 절박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든가 또는 작은 문회를 만들어 서로 친교와 단결을 유지하는 계기로 삼는 것 또는 고인의 후손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등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397-5557)